

# 2025년 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 분석시약 구매계약 규격서

## 1. 목적

본 규격서는 사천시의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 1팀의 실험실(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의 실험 분석 등에 사용되는 시약, 표준품의 공급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2025년 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 분석시약 구매계약」의 분석시약, 표준품, 소모품 구매 건에 적용한다.

## 3. 납품자격조건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에 의한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시약판매업 신고증을 제출) 단, 시약판매업 등록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둔 업체.

## 4. 제품규격 및 수량

본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분석시약 및 표준품, 소모품의 규격 및 수량은 「2025년 실험실 분석시약 구매내역서」를 따르며, 아래 표를 참조한다.

연번	품 목	규격 및 등급	수량	단위	비고
1	0.025N 과망간산칼륨	1L, S/T	3	개	
2	98% 황산	1kg, GR	10	개	
3	0.025N 옥살산나트륨	1L, ST	3	개	
4	99.5% 황산은	25g, GR	2	개	
5	99% 과황산칼륨	500g, NP, 32375-08	13	개	
6	99.6% L-아스코빈산	500g, GR	1	개	
7	수산화나트륨	500g, NP, 37184-08	5	개	
8	37% 염산	1kg, GR	5	개	
9	질소표준용액(Nitrogen standard solution) (NO3-N 1000)	100ml, 28670-96	2	개	보증서 必
10	인표준용액(Phosphorus standard solution) (PO4-P 1000)	100ml, 32958-96	2	개	보증서 必
11	99% 염화칼슘	500g, GR	1	개	
12	99% 인산일수소나트륨	500g, GR	2	개	
13	99.5% 황산마그네슘 7 수화물	500g, GR	2	개	
14	황산망간4수화물	500g, GR	1	개	
15	0.025M 티오황산나트륨	1L, S/T	2	개	
16	99% 아자이드화나트륨	500g, GR	1	개	
17	99.5% 요오드화나트륨	500g, GR	1	개	
18	잔류염소 측정키트	pk/100, Hi93701-01	36	개	
19	펩톤	500g, 211677	1	개	
20	데속시콜레이트한천배지	500g, 227310	36	개	
21	페트리접시	90mm * 15mm, 500ea/	45	박스	
22	암모니아성질소 수질분석키트(NH3, HR, Sali)	100/pk, 10333-00	30	박스	
23	질산성질소 수질분석키트(NO3, HR, Ch)	100/pk, 10413-00	30	박스	
24	인산염인분석키트	pk/100, 21060-69	18	개	
25	94.5% 에틸알코올	1L, EP	6	개	
26	pH4 완충용액	1L, S/T	5	개	
27	pH7 완충용액	1L, S/T	5	개	
28	pH10 완충용액	1L, S/T	5	개	
29	85% 인산	GR, 1kg, 6532-4100	1	개	
30	1000µg/L총유기탄소표준용액	WC-TOC 10X-1(100mL)	24	개	보증서 必
31	1000µg/L총무기탄소표준용액	WC-TIC 10X-1(100mL)	14	개	보증서 必
32	GF/C 필터(47mm)	47mm,100매, 1822-047	145	개	
33	GF/C 필터(110mm)	110mm,100매, 1822-110	100	개	

## 5. 납품기간

본 계약의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19일까지로 한다.

## 6. 계약해지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계약보증금 귀속은 물론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 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납품을 거부한 때
- 나.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거나 납품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발주자가 판단한 때
- 다. 규격 미달품을 납품하거나 납품량을 허위·조작한 때
- 라. 특정 사유 없이 본 계약서 상의 정당한 요구사항(납품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 마. 영업의 폐지, 변경, 합병 또는 해산한 경우
- 바. 회사정리절차 혹은 파산의 신청이 있을 때
- 사. 법원의 판결 또는 감독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된 때
- 아. 기타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때

## 7. 납품조건

- 가. 실험실의 각종 수질분석은 미량의 성분 분석을 요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본 실험실에서 요구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동등한 규격의 물품을 납품할 시 계약 상대방이 물품의 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 나. 계약자가 자의로 규격을 판단하여 요구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납품할 경우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다. 본 계약에 의한 수량은 예산총액 안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품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납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라. 물품은 필요에 따라 수시 발주하며 납품요구일로부터 국산품은 15일 이내, 수입품은 40일 이내에 납품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납품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약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미리 납품일을 조율하여 납품할 수 있다.
- 마. 시약의 유효기한(expired date)은 제품에 제조일자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제조일자가 1년 이내의 것으로, 유효기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검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1/3이 경과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한이 짧은 시약은 실험실과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 바. 납품한 물품이 변질 및 파손, 유효기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품업체가 발생비용을 부담해야하며 해당제품에 대하여 즉시 적합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사. 제품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이 “마”의 항목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납품 후 사용 시

-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즉시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 아. 시약 납품 시 납품요청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성능규격에 적합하고 필요한 보관 상태를 유지한 제품을 납품기일을 엄수하여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자. 시약 납품시 보관 방법(냉장, 냉동, 실온)을 반드시 준수하여 납품하고 실험실에 해당 보관 방법을 통보해야 한다.
  - 차. 실험실은 납품한 물품의 보관상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
  - 카. 납품할 소모품 및 시약은 담당자의 검사·검수를 받아 합격된 물품에 한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업체는 검사·검수 시 동석해야 한다.
  - 타. 구매제품 중 제조사가 명시된 물품은 변경하여 공급할 수 없으나 『생산중지』또는 『출고중지』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회사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물품에 대한 변경지시를 받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파. 발주한 시약을 납품할 때에는 MSDS를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 하. 납품 시 표준물질의 경우 공인기관 및 제조사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8. 품질(검사)시험

- 가. 납품업체는 본 계약에 따라 납품한 물품이 시약구입 규격서의 시약 규격 이상임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최초 납품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실험실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 (1) 우수제품지정증서(해당제품일 경우)
  - (2) 환경표시인증서(해당제품일 경우)
  - (3) 성능인증서(KS등 규격품일 경우)
  - (4) 공인기관 및 제조사의 시험성적서
- 나. 납품한 약품에 대하여 수량 확인 및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수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 다. 본 품의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결과 규격이하일 경우나 검수시행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당회 납품 전량을 부적합 통보 후 3일 이내에 회수하고 당회에 납품할 수량을 적합 품으로 교체 납품 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제반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적합품 중 이미 사용한 수량에 대하여는 대금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라. 부적합 물품을 부적합 판정 통보 후 3일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할 경우 실험실에서 임의로 처분 또는 사용하여도 대금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마. 실험실은 품질 규격 미달 횟수가 연 2회 이상 및 중도에 구매계약 해지를 한 납품업체에 대해 다음 연도 입찰 시 참가 제한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단, 고의로 시약 품질 규격이 미달된 상태로 납품한 경우에는 횡수에 관계없이 다음연도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바. 규격미달 물품에 대하여 통보 후 3일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할 경우 실험실에서 임의로 처분 또는 사용 시 대금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사. 본 품의 가격에는 시약비, 납품소요 운반비, 계량비, 검사 및 검수수수수료 등의 제반경비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기타 일체의 소요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 9. 기타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험실과 납품업체 간의 협의에 의하되, 설명서 해석 상 이의가 발생할 경우 실험실의 해석에 따른다.